

「問」 國文火災保險證券와 英文火災保險證券은 어떤 差異가 있습니까?

「答」 國內에서 使用되고 있는 英文證券은 F.O.C. (Foreign) Policy Form과 American Standard Policy Form, Korean Pacific Chemical Insurance Policy Form 등이 있습니다.

American Standard Policy Form과 Korean Pacific Chemical Insurance Policy Form은 經인에 너지, 한양화학등 몇몇 업체에만 使用되고 있으며 F.O.C(Foreign) Policy Form이 가장 널리 使用되고 있습니다.

F.O.C(Foreign) Policy Form은 英國의 Fire Offices' Committee (Foreign)에서 制定한 英國以外의 地域에서 使用하는 統一約款입니다.

同委員會는 1868년~1869년에 걸쳐 設立된 火災保險料率 協定團體로 英國以外地域에서 適用할 協定料率, 統一約款 統則制定 및 代理店手數料策定 등의 業務를 遂行하며 各國에서 制定된 料率을 認定하는 등 關係國과 밀접한 關係를 維持하고 있다.

大部分의 外國火災保險會社가 巨大危險에 대해서는 英國再保險市場에 付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事前에 적정한 料率提示와 技術指導 등을 하고 있는 團體입니다.

F.O.C(Foreign) Policy Form과 國文證券과의 差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擔保危險에 있어서 國文約

款은 火災(벼락 포함), 消防損害, 火災에 따른 避難損害(避難地에서 5일 동안에 생긴 上記 두가지 損害를 擔保하나 F.O.C(Foreign) Policy Form에서는 避難損害는 擔保하지 않으며,

둘째, 同一世帶에 屬하는 사람이 所有하는 動産에 대해서 國文約款은 擔保하나 F.O.C(Foreign) Policy Form에서는 擔保하지 않습니다.

셋째, 爆發로 인한 損害인 경우 火災後爆發이 續發되고 以後 火災가 續發된 경우 國文約款에서는 爆發

에서는 Extend Coverage Endorsement(폭풍, 우박, 폭발 등 擔保)등 38種의 擴張擔保特約을 添附할 수 있습니다.

일곱째, 保險料率面에서 보면 두 개 이상의 保險目的物이 있을 때 國文約款契約에 있어서는 各建物の 構造, 用途等에 따라 자기 個別料率을 適用토록 되어 있는 반면 F.O.C (Foreign) Policy Form에서는 통상한 개의 料率로 모든 保險目的物에 適用하게 됩니다.

따라서 各物件의 保險契約者事情에 따라 英文證券이나 國文證券을 任意로 選擇, 契約을 要請할 수 있으나 英文證券使用은 財務部의 英文約款使用制限指示(73.2.31)에 依據 다음 事項中 하나에 該當되어야만 使用할 수 있도록 制限되어 있습니다.

① 付保物件의 保險金額이 同一構內의 危險으로 契約當(證券當) 300만불을 超過하는 경우.

② 外國으로 부터의 借款業體나 合作投資業體

③ 國內에 所在하는 外國人 所有의 保險目的(☆)

相談 코너

火災保險

을 除外하고 火災損害는 전부 擔保하나 F.O.C(Foreign) Policy Form에서는 爆發以後에 續發되는 火災는 이를 擔保하지 않습니다.

넷째, 國文約款에서는 保險者의 契約解除權을 特別한 경우(告知, 通知義務違反等)에 한해서 認定하나 F.O.C(Foreign) Policy Form에서는 保險者의 通知만으로 契約을 解除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擴張擔保面에서 보면 國文約款은 構內爆發危險擔保等 10여종의 擴張擔保約款이 使用되고 있으나 F.O.C(Foreign) Policy Form

宋河龍

(本協會·企調部代理)

(問) 단층(單層)이 아닌 건축물의 1층 또는 지하층에 危險物 옥내탱크저장소를 설치하는 보안을 하려고 할 때 그 설치기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答) 옥내탱크저장소라는 것은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하며 이것은 소방법에서 定하는 옥외탱크에서와 같은 保安거리 및 保有공지의 적용은 없지만 그 반면 저장탱크의 용량을 지정수량의 40배에 한정하고 있으며 내화구조 등의 전용실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탱크의 위치

일반적으로 옥내탱크저장소는 단층건축물의 탱크전용실에 설치하여야 하나, 本질문에서와 같은 단층건축물이 아닌 곳에도 설치할 수 있는 위험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2류의 위험물中 황린, 황화인, 적린 및 피상(塊狀)의 유황, 제 3류 위험物中 생석회, 제 4류 위험物中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 인것(경유, 방카C유는 이에 해당됨) 또는 제 6류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것에 한합니다.

2. 탱크실內的 간격

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사이 또는 1개의 전용실內에 탱크를 2이상 설치할 경우의 탱크 상호간의 사이에는 0.5미터 이상의 간격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3. 표지

옥내탱크저장소라는 뜻을 표시한 표지 및 기타 防火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게시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가로 60cm, 세로 30cm.)

4. 탱크의 용량

2이상의 탱크를 1개의 전용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합친 용량이 앞에 기재한 용량 이하로 되어야 합니다.

5. 통기관

압력탱크 이외의 탱크에 있어서는 지름 30밀리미터 이상의 배관을 옥외로 유도하여 선단을 수평보다 45도 이상 아래로 구부리고 선단에는 가는 눈의 동(銅)선망 등으로 引火방지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선단의 높이는 지상 4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물의 창 또는 출입구

이 있는 경우에는 그 上層의 바닥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上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만들어야 하며 반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8. 방화문

탱크전용실에 窓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되며 출입구에는 甲種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단, 생석회 및 제 6류 위험물은 예외)

9. 출입구의 문턱

저장탱크에서 새어 나오는 위험물은 전용실 이외의 부분에 유출되지 못하게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畧용량이 수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0. 환기설비

탱크전용실 내부에 체류한 증기를 배출하기 위한 환기설비를 설치하되, 방화상 유효한, 뎀퍼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11. 전기설비

전용실의 전기설비는 방폭구조 등으로 하여야 합니다.

12. 소화설비

가. 액체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로서 높이가 6미터 이상이거나 액 표면적이 40평방미터 이상, 또는 인화점이 40도 이상, 70도미만의 위험물(경유는 이에 해당됨)을 지정수량의 10배 이상 저장할시는 제 3종 소화설비(포말 소화설비等)를 적용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합니다. 나. 上記에 미달시에는 제 4종(대형소화기) 및 제 5종 소화설비(보통소화기)를 각각 1개 이상 설치 하여야 합니다. (☆)

相 談 코 너

安 全 點 檢

등의 개구부로부터 1미터 이상 떨어져 있도록 하며 가급적 굴곡이 적게 되도록 합니다. (이것은 注入할 때 등에 탱크내부에 있는 引火性 증기가 나오는 것에 대한 방호대책임).

6. 자동감지장치

액체의 위험물을 注入시에 탱크와 注入口의 위치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위험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注入과 동시에 注入口에서 위험물의 量을 자동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합니다. (인터론, 액높이 표시경보기 등)

7. 지붕

탱크전용실은 그 건축물에 上層